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법 제24조제2항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수행업무로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1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2호)”,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4호)” 등을 명시하고 있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근로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추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교육 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 대상 범위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16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교육 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3. <u>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②~⑦ (생략)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3. <u>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교육 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u> 4. <u>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②~⑦ (생략)